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나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 또는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명절,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6개월 이내) 중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한시적(1개월 이내 : 영업일 기준)으로 5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6)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 계약자(계약업체)가 우편관서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2) 신규고객이 월평균 5,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이 2kg이하이고 크기가 2,500㎤ 이하의 초소형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5) 우정사업본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1) 중량 2kg, 크기(가로+세로+높이) 6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 기준) 요금의 46% 미만
2) 중량 5kg, 크기(가로+세로+높이) 8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 기준) 요금의 51% 미만
3) 중량 1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2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 기준) 요금의 51% 미만
4) 중량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4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 기준) 요금의 36% 미만
5) 중량 3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6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 기준) 요금의 25% 미만

나. 계약요금 감액기준표

<table>
<tr><th>구분</th><th>감액요건</th><th colspan="2">감액요금</th></tr>
<tr><td rowspan="3">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td><td>가.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td><td colspan="2">200원이하</td></tr>
<tr><td>나. 우체국까지 운송(계약관서)</td><td colspan="2">100원이하</td></tr>
<tr><td>다. 집중국(물류센터 포함)까지 운송(계약관서)</td><td colspan="2">200원이하</td></tr>
<tr><td>2. 신규이용고객</td><td>라. 1년 이내
· 월평균 5,000통 이상 발송
·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 월평균 30,000통 이상 발송</td><td colspan="2">
50원 이하
100원 이하
200원 이하</td></tr>
<tr><td rowspan="2">3. 장기이용고객</td><td rowspan="2">마.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
·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
·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 월평균 30,000통 이상 발송</td><td>1년 이상</td><td>3년 이상</td></tr>
<tr><td>100원이하
150원이하
250원이하</td><td>150원이하
200원이하
300원이하</td></tr>
<tr><td>4. 초소형 택배</td><td>바. 중량이 2kg 이하이고 크기가 2,500㎤이하
·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
·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td><td colspan="2">
100원 이하
200원 이하</td></tr>
<tr><td colspan="2">5. 지방청장 특별감액</td><td colspan="2">100원 이하</td></tr>
</table>

구분	감액요건	감액요금
6. 추가감액 한도액		1년 미만 : 500원 1년 이상 : 550원 3년 이상 : 600원
7. 초소형 최저계약요금		10,000통 이상 : 1,700원

o 초소형택배 10,000통 이상을 제외한 최저 계약요금은 1,800원으로 함.

o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4-6호(2014. 1.21.)는 폐지한다.
2.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